## 경운대학교 시설물관리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내에 설치된 시설물(이하 "시설"이라 칭한다)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의무) 우리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규정을 성실히 지키며 시설물의 자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- **제3조(업무관장)** ①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처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21.10.01.> ② 시설의 제반 관리에 대한 책임은 행정지원처장이 진다. <개정 2021.10.01.>
- 제4조(담당자 지정) ① 행정지원처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직원 중에 별도로 시설물 담당 자를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0.01.>
  - ② 시설물 담당자의 시설물 점검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처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1.10.01.>
- **제5조(수리, 수선업무)** 각종 시설물의 수리, 수선업무는 시설물담당자의 결과 보고에 따라 월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결재 후 시행한다.
- **제6조(인력충당)** 수리, 수선에 대한 인력은 가능한 자체인력으로 충당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 결재를 득하여 인력충당을 할 수 있다.
- **제7조(시설대여)** 우리대학교의 시설을 대여할 때에는 학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대여하되 시설의 파손 또는 오손에 대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8조(대여의 제한) 우리대학교의 시설물은 순수 교육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외부단체에게 대여는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9조(현황파악) 행정지원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건물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작성 비치한다. <개정 2021.10.01.>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<2021.10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